

2023년도 제7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2023. 5. 18.



신안산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신안산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3. 5. 19.(목) 11:00
2. 장소 : 신안산대학교 본관 2층 세미나실I
3. 구분 : 정례 비정례

구분	인원	성명
참석인원	10명	오혁수, 이귀영, 김동련, 최승호, 김기동, 고찬영, 김영주, 윤미리, 김경준, 김다희
불참인원	3명	김세환, 강부근, 김은혜

4. 회의 안건 및 결과

회의안건	심의결과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사항	원안의결
2. 교내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	원안의결
3.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대한 사항	원안의결

5. 개회 선언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어 오혁수 의장이 대학평의위원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다.

6. 회의 내용

제1호 안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김기동 의원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대해서 설명함.

1. 학칙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52조의 2 (교무회의 구성 및 소집)	1. 교무회의는 총장, 부총장, 처장, <u>도서관장, 국제교류협력원장, 센터장, 평생교육원장</u> ,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1. 교무회의는 총장, 부총장, 처장, <u>부설기관장</u> ,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부서개편으로 인한 교무회의 참석대상자 수정
제54조 (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1.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u>교무혁신처장, 학생취업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처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u> 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 <u>교</u>	1.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u>각 처의 장, 평생교육원장, 신안산대지부노동조합 대표1인</u> 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 <u>교수</u> 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부서개편으로 인한 교무위원회 참석대상자 수정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있다.	
제27조 (교과이수 단위)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75학점 이상, 3년제 1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2년제는 교양교과 8학점, 전문교과 62학점 이상, 3년제는 교양교과 12학점, 전문교과 9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75학점 이상, 3년제 1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2년제는 교양교과 6학점, 전문교과 50학점 이상, 3년제는 교양교과 10학점, 전문교과 7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이수단위 변경
제57조 (직제)	① 본 대학에는 교무혁신처, 학생취업처, 산학협력처, 기획처, 사무처, 입학홍보처, 산학협력단을 둔다.	① 본 대학에는 교학처, 대외협력입학처, 기획처, 사무처를 둔다.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별지 제1호] ~[별지 제4호]	신안산대학교 총장 강성탁	신안산대학교 총장 ○○○	별지 내용변경

2. 학칙시행세칙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6조의2 (전과)	① 학칙 제19조에 의해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승인을 얻어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한다. ②-⑧ <생략>	① 학칙 제19조에 의해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승인을 얻어 <u>교학처</u> 에 제출한다. ②-⑧ <현행과 같음>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9조 (휴학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보증인 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부처(도서관, <u>학생취업처</u> , 사무처, 예비군대대)를 경유하여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2. <생략> 3. 군입대 : 입영통지서 사본, 입대한 경우는 병적증명서를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4.-5. <생략> ③ 일반 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휴학을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보증인 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부처(도서관, 사무처, 예비군대대)를 경유하여 <u>교학처</u> 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군입대 : 입영통지서 사본, 입대한 경우는 병적증명서를 <u>교학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4.-5. <현행과 같음> ③ 일반 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휴학을 <u>교학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삭제 및 변경
제10조 (귀향신고 의무)	①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귀향조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u>교무혁신처</u>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귀향조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u>교학처</u> 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13조 (자퇴)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에 보증인 연서 및 증빙서류를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에 보증인 연서 및 증빙서류를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부처 (<u>학생취업처</u> , 사무처, 도서관, 예비군대대)를 경우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부처 (사무처, 도서관, 예비군대대)를 경우 <u>교학처</u> 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서명 삭제 및 변경
제25조 (교육과정)	① <생략> ② 교육과정은 각과 학과장이 작성하여 학년도 개시 2개월 전에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하여 교육과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과정은 각과 학과장이 작성하여 학년도 개시 2개월 전에 <u>교학처</u> 에 제출하여 교육과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26조 (수업시간)	① <생략> ② 학과장은 수업시간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행하고 공고된 수업시간표는 <u>교무혁신처장</u> 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과장은 수업시간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행하고 공고된 수업시간표는 <u>교학처장</u> 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
제30조 (휴강 및 결강)	① <생략> ② 공·사적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자 할 때는 7일전에 휴강계와 보강계를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적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자 할 때는 7일전에 휴강계와 보강계를 <u>교학처</u> 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34조 (무계출 장기결석사 처리)	각 교과담당교수는 작성하여 <u>교무혁신처</u> 로 제출하여야 한다.	각 교과담당교수는 작성하여 <u>교학처</u> 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3조 (발급사무)	증명서 발급사무는 졸업(예정), 재학, 수료, 제적, 성적 등의 학적에 관한 증명서는 <u>교무혁신처에서 발급하며</u> 학생증, 통학증, 학생 신상 문제에 따른 증명서는 <u>학생취업처</u> 에서 발급한다. 1.-11. <생략>	증명서 발급사무는 졸업(예정), 재학, 수료, 제적, 성적 등의 학적에 관한 증명서와 학생증, 통학증, 학생 신상 문제에 따른 증명서는 <u>교학처</u> 에서 발급한다. 1.-11. <현행과 같음>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삭제 및 변경
제57조 (학적부 정정)	① 다음 각 호의 1이 학적부와 상이하여 정정이 필요한 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1이 학적부와 상이하여 정정이 필요한 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u>교학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58조 (학번부여)	① <생략> ② 학번은 졸업 시까지 변경하지 못한다. <u>다만</u> , 복학이나 재입학의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학번을 그대로 사용한다. ③ <생략>	① <생략> ② 학번은 졸업 시까지 변경하지 못한다. <u>그리고</u> , 복학이나 재입학의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학번을 그대로 사용한다. ③ <생략>	내용 수정

- 오혁수 의장이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 평의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의결함.

▣ 제2호 안건. 교내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교내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최승호 의원이 교내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해서 설명함.

1. 근거 : 「임대관리운영규정」 제5조(임대의 허용범위)

2. 임대 종류 : 토지 임대

3. 토지 위치 : 소각장 뒤편 유희 부지 약850㎡(257평)

4. 임대 목적 : 유희 부지를 활용하여 대학 수익 창출

5. 임대 업종 : 가로청소차(도로흡입차 4대, 집게차 1대, 포토 2대) 차고지

6. 임차인 : 주식회사 명승환경(대표이사 김운식)

7. 임대 계약 방법

- 임대 기간 : 2년 마다 계약

- 보증금 : 2천 5백만원

- 임대료 : 월300만원(부가세 별도) / 수도료 등 관리비 월 20만원(전기료 별도 계량기 설치, 자부담)

- 차량 출입 : 도로흡입차 21시~4시, 집게차 1대, 더블캡차 상시

8. 기타 사항

- 교내 도로 주 1회 이상 무상 청소

- 소각장 뒤 폐자재 무상 처리

- 외부에서 차량 세차

- 오혁수 의장이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 평의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의결함.

▣ 제3호 안건.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대한 사항

- 오혁수 의장이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대하여 발의한다고 하고, 설명을 요청함.
- 윤준한 사무국장이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대해서 설명함.

1. 처분할 재산의 표시

가. 교육용기본재산(토지) 처분 부동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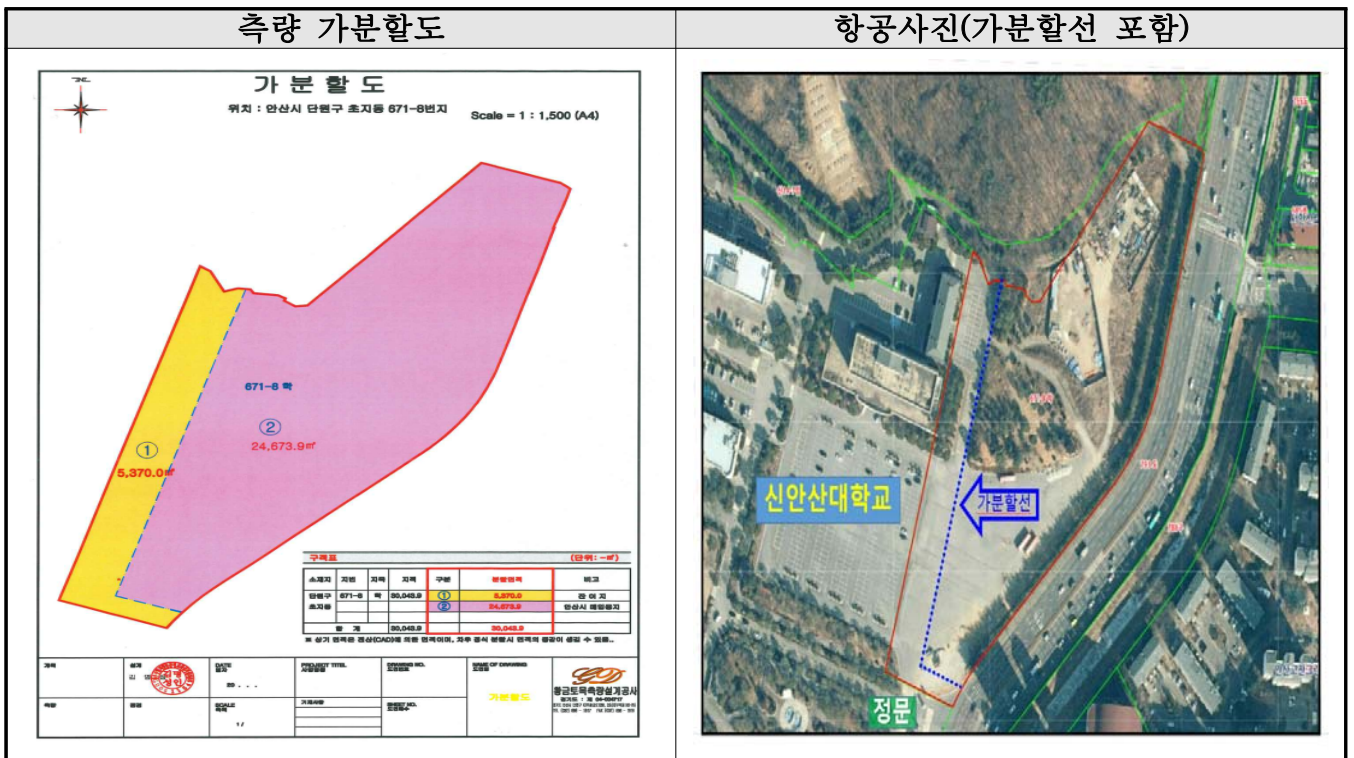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안산시 초지동	671-8	학교용지	공부면적 30,043.9㎡ 중 5,370㎡ 제외한 24,673.9㎡(7,463평)	
합 계				24,673.9㎡	

나. 처분부동산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금액

(단위: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평가액	감정평가 평가금액		매각 예상금액
					제일	썬브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71-8	학교 용지	공 부 면 적 30,043.9㎡ 중 5,370㎡ 제외한 24,673.9㎡ (7,463평)	25,537,486,500 2023 공시지가 (1,035,000)	제일	31,582,592,000	1. 제일감정 평가법인 - 31,582,592,000원 2. (주)썬브감정 평가법인 - 29,608,680,000원
					썬브	29,608,680,000	
합계			24,673.9㎡	-	제일	31,582,592,000	1. 제일감정 평가법인 - 31,582,592,000원 2. (주)썬브감정 평가법인 - 29,608,680,000원
					썬브	29,608,680,000	

다. 초지동 671-8번지 측량 및 항공사진 가분할도



2. 처분예정금액 : 30,595,636,000원

3. 처분사유

학교법인 순효학원(신안산대학교)에서는 2022년도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 현재(기준일 : 2022.04.01.) 교육용기본재산이 기준대비 [76,036㎡(23,001평)] 확보율이 459,805㎡(139,091평) 으로 604.7% 과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신안산대학교)에서는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법인)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개정 알림(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6304(22.06.15))』 공문 통보에 의거 교육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토지(학교용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8번지(공부면적 30,043.9㎡ 중 5,370㎡

를 제외한 24,673.9㎡)를 매각하여 학교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법인(신안산대학교)은 교육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미활용의 교육용 토지를 안산시에 공공시설로 사용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이에 안산시에서는 본 법인(신안산대학교)과의 상생방안 등을 모색하고, 미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초지동 671-8번지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안산시 회신에 따라 이에 본 법인(신안산대학교)에서는 안산시와 매각에 따른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8번지(공부면적 30,043.9㎡)는 나대지 상태(건축물, 지장물 없음)이고 학교시설 세부조성계획상 주차장 및 지원시설, 학교시설예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감정평가 법인【제일감정평가법인, (주)써브감정평가법인】에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71-8번지 【공부면적 30,043.9㎡중 5,370㎡를 제외한 24,673.9㎡(7,463평)】』의 복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감정 결과 제일감정평가 법인에서는 초지동 671-8번지【공부면적 30,043.9㎡중 5,370㎡를 제외한 24,673.9㎡(7,463평)】 31,582,592,000원, (주)써브감정평가 법인에서는 29,608,680,000원이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지 매각을 통해 형성된 부동산 매각대금 평균값을 30,595,636,000원으로 예상할 때 3년 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지방소득세포함) 및 매각대금 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감면받습니다.

그러나 3년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금(법인세·증여세)이 부과되는 것으로 세무전문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부동산 매각대금 30,595,636,000원 이상을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여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신안산대학교에 임금채불해소와 신입생 장학금, 실습실 공사 및 노후 기자재 교체, 건축물 유지보수 등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개선, 인건비 절감을 위한 명예퇴직제 확대, 유휴 교사시설을 활용한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등 대학의 경영난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학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교육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기준일자 : 2023.04.01.)

가. 2023년도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 현황(기준일 : 2023.04.01.)

(단위: 천원)

구분	① 교육용 토지(교지, ㎡)			② 교육용 교사(건물, ㎡)		
	기준	보유	확보(%)	기준	보유	확보(%)
현재	76,036 (23,001평)	459,805 (139,091평)	605	38,017 (11,500평)	58,327 (17,644평)	153

나. 2023년도 교육용 기본재산 초지동 671-8번지 처분 후 확보율 현황

구분	교육용 토지 (교지, ㎡)				
	기준	보유	처분면적(1필지)	처분 후 남은면적	확보율(%)
변경 후	76,036 (23,000평)	459,804 (139,090평)	24,673.9 (7,463평)	435,130 (131,626.8평)	572

- **고찬영 의원**이 땅을 매각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재정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매각 후 1순위로 임금채불 해소를 생각하는지 질의함.
- **윤준한 사무국장**이 임금채불 해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고찬영 의원**이 다른 대학의 경우에 부지를 매각하고 3~400억씩 재정을 확보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신입생을 뽑기 위해 투자를 하다가 결국엔 0원이 되는 상태가 됨. 회의 자료에 있는 매각 대금 사용 예정 내역을 보면 인건비 절감을 위한 명예퇴직제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의 경우에는 많은 인원들이 감소되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므로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오혁수 위원장**이 아마 직원들의 업무 공백은 어느 정도 충원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명예퇴직 확대는 교원들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임. 예산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많은 교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입에 맞춰서 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많은 직원들이 퇴직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교원은 아직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김동련 의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명예퇴직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안정화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보임. 해당 부분을 인건비 절감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융통성 있게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임.
- **윤준한 사무국장**이 김동련 의원이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제출하겠다고 답변함.
- **최승호 의원**이 아마 추후 교육부에서 토지 매각 후 사용 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임. 현재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보고 공신력 있는 법무부와 안산시와 매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신뢰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장 교육부에 27가지 민원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감사나 다름없다고 생각함.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시기적으로 처분 신청 시기와 맞물리고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지속적으로 방송되고 수십 가지 민원들이 산적해있는데 완벽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당 주무관 입장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움.
- **윤준한 사무국장**이 최승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27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만 나오지 않았을 뿐 감사나 다름없다고 생각함. 27가지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내용은 이미 처분 받고 행정적으로 종료된 부분에 민원으로 제기하였음.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서와 증빙자료를 보낸 후 날짜가 지정되면 교육부에 소명할 예정이며 최대한 소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오혁수 의장**이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 평의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의결함.

7. 폐회선언 :

이상 안건을 심의 종료하고 11시 50분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의 회의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의장 오혁수



의원 김세환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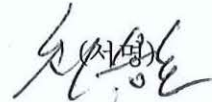
이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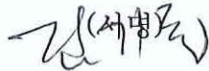
김동련



최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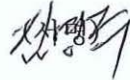
김기동



고찬영



김영주



윤미리



강부근

(서명)

김경준



김은혜

(서명)

김다희

